

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1563
----------	------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및 성남시문화재단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
-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상임위원회 별로 명확히 세분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중
제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을
제4호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성남시문화재단을 추가
- 성남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

□ 검토결과

- 시의회가 성남진흥재단 및 성남시문화재단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
- 검토결과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동조례의 개정 문제에 문제점이 없음